

『구미시수도시설원인자부담금및손괴자부담금의산정・징수등에
관한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 2002년 10월 21일

나. 제 안 자 : 구 미 시 장

다. 회부일자 : 2002년 10월 21일

라. 상정일자 : 2002년 10월 28일

제74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상정, 질의, 토론,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가. 제안설명자 : 도시건설국장 김 해 운

나. 제안이유

- 구미시 수도시설에 대한 원인자 부담금 및 손괴자 부담금의 산정과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공기업 운영 합리화와 부담금 규정을 명문화하여 상수도사업의 발전과 주민복지증진에 기여코자 함.

다. 주요내용

- 수도관리자의 의무 (제3조)
 - 수도시설의 손괴발생시 피해상황 파악 등 신속한 대처와 손괴 우려가 예상되는 타 공사자에게 필요한 예방대책 강구토록 조치.
- 부담금 부과대상 및 범위 (제4조)
 - 공급능력 이상의 물수요 야기시 수도시설 신증설에 필요한 공사비용을 원인 제공자에게 부담시키고 급수구역 밖의 신축건물에 소요되는 송, 배수시설 공사비용을 사용자에게 부담.

○ 부담금의 산정기준 (제5조)

- 원인자 부담금의 산정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원가계산에 의거 설계도서 작성 및 준공 검사비 등의 수수료를 포함.

○ 수도시설 공사의 원인 제공자 또는 손피자가 다수일 경우 손피 기여 비율로 분할부과(제8조) 원인자부담금 등의 정산, 과오납처리(제9,10조)

라. 참고사항

- 관련 법령 : 자연재해대책법 제64조, 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 제59조

3. 검토보고의 요지 - 전문위원 정 완 진

- 본 제정 조례안은 수도시설 공사비용을 원인 제공자 또는 사용자에게 부담시키고 각종 공사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도시설의 파손을 사전에 예방하고 손피자로 하여금 신속한 복구 조치와 적절한 보상조치를 강구토록 함으로써 상수도 시설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상수도 공기업을 합리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취지임.
- 지금까지는 관련 수도법 및 시행령에 의거 시행되어 왔으나 2002. 7. 29 환경부의 조례 표준작성 안에 의거 수도관리자의 의무, 부담금 부과 대상 및 범위, 부담금 산정과 징수 등에 관한 규정을 보다 상세하게 조례로 명문화하는 내용으로서
- 제정 조례안의 내용이 상위 법령이나 다른 조례와 상충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4. 결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5. 토 론 요 지 : 생 략

6. 소수의견의 요지 : 없 음

7.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